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인의 국내면허증 교환·발급 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면허증 회수 사유를 규정하고,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신설되어 범칙금 항목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, 1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) 법 제8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해당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
2.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회수를 조건으로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

별표 8 제27호의 근거 법조문(도로교통법)란의 “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”를 “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<u><신 설></u>			제52조의2(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)		
			법 제8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	
			1.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해당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		
			2.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회수를 조건으로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		
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운전자)			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운전자)		
범칙행위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차량 종류별 범칙금액	범칙행위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차량 종류별 범칙금액
27.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	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	1) 승합자동차등: 5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3만원 4)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: 2만원	27.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	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	1) 승합자동차등: 5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3만원 4)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: 2만원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02 - 3150 - 0659